

제7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12. 28.(화) 11: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2010~2011년도 접속료 산정 등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 - (2010-78-356)

○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010~2011년 유·무선전화망 및 인터넷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유선전화망 접속료) 동축케이블(가입자선로) 유지 유인을 억제하고, 차세대 통신망 (FTTX)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유도

(단위 : 원/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유선전화	19.31원	19.15원	18.57원

② (이동전화망 접속료) 유효경쟁정책 전환 방침과 단일접속료를 지향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통신사업자간 접속료 격차 축소

-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 서비스 개시가 예상되는 2013년 단일접속료 적용

(단위 : 원/분)

구 분	SKT	KT	LG U+
2009년	32.93	37.96 (15%)	38.53 (17%)
2010년	31.41	33.35 (6.2%)	33.64 (7.1%)
2011년	30.50	31.75 (4.1%)	31.93 (4.7%)

※ ()는 SKT와의 접속료 격차 비율

③ (인터넷전화망 접속료) 인터넷 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인상하여 유선전화 (PSTN)와의 접속료 격차를 축소하고 인터넷 전화 이용 촉진

(단위 : 원/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인터넷전화	7.66원	10.51원	10.48원

④ (기타사항)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유·무선 지원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지

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0-78-357)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시행령 개정('10. 10. 1)에 따라 편성비율 산정기간 변경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가산제 도입 등을 위해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방송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 ②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
 - ※ 평일 : 7시~9시, 17시~20시,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 ③ 동·하계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의 경우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시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④ 재난방송의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자구 수정
 - ※ '방송법 제75조'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로 변경
 - ⑤ [별표1]의 '제5조에 의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제6조에 의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으로 정정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고시 제·개정 등에 관한 건 - (2010-78-358)

-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10. 10. 1)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고, 현행 고시 중 과도한 보호조치 기준을 현실화하며 중복·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
 - ① 기본과징금의 산정
 -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0.5%~0.9%)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 ※ 매출과 관련없는 위반 행위 또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

-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일반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가지로 구분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방식

- 1단계(원인 고려) : 일반 위반행위 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
- 2단계(결과 고려) : 피해가 경미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일반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 ⇒ 이득획득 여부, 피해규모, 외부노출 여부 고려

② 과징금의 의무적 조정

-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라 50% 범위에서 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함

◆ 의무적 조정 방식

- 1단계(의무적 가중) : 위반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

위반 기간	1년 이내(단기)	1~2년(중기)	2년 초과(장기)
가중 기준	가중 없음	25% 가산	50% 가산

- 2단계(의무적 감경) : 위반횟수에 따라 최초 위반 행위자는 50% 감경

③ 과징금의 임의적 조정

- 50% 범위에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감경할 수 있는 재량 부여

가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용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경우(30% 이내) · 다수 사업자가 관련된 위반 행위를 주도·선도한 경우(20% 이내)
감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통위가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50% 이내) · 개인정보 위반에 관한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30% 이내)

④ 시정조치 명령

-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① 내부관리계획 정의 신설

- 사업자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대하여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 신설 및 관련 조문 수정

② 개인정보 출력·복사물의 세부적인 보호조치 규정 삭제

-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 보호조치 의무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보호조치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

③ 「개인정보보호지침」 고시 폐지안

- 법률·시행령 개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모든 내용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현행 고시 폐지

사. 보고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전파관리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검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 위임 (안 제70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현재 위임되어 있는 사항(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를 위한 조사)은 현행대로 유지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은 현행대로 위원회가 수행

아. 기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일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6. 폐 회 (11:45)